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긴급지침]

N번방 보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악성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중대한 범죄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취재 보도 방식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또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지침도 필요합니다. 이에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 지침을 발표합니다. 각 지본부에서는 취재와 보도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이 관련 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위한 낚시성 기사 생산을 지양하고,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2.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달지 맙시다.

장소나 구체적인 행위 등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제목으로 관심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에서도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 그 자체이며 세부 묘사는 사건 이해에 불필요합니다.

3.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 고유의 성적 충동’ 등의 표현으로 남성이 본능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선 안 됩니다. ‘뽀글 짓’, ‘검은 손’ 등 가해행위에 대한 모호한 표현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 노리개’, ‘씻을 수 없는 상처’ 등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순결이 훼손된 일,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치스러운 일’로 잘못 인식시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성 노리개’라는 표현은 인간인 피해자를 물건 취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공감할 수 없게 합니다.

5.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는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하여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6.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음란물 유포’ 썸으로 가볍게 인식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피해자 보호와 지원 과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7.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한 사회구조적 문제제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 보도해야 합니다.

※ 참조 : 여성가족부 2018 성희롱 성폭력 보도수첩, 신문윤리실천요강,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2020년 3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 민주언론실천위원회

※ 여성가족부 2018 성희롱 성폭력 보도수첩

V.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2.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 ▶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 언론은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하여야 한다.
- ▶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 ▶ 언론은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 ▶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폭력·성희롱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VI.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1)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 ▶ 문제는 간접적인 노출! 신원노출을 막아주는 안전한 모자이크, 음성변조란 없다.

6)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를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
- ▶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필요이상으로 묘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과정, 양태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자세히 설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몹쓸 짓’, ‘나쁜 손’, ‘몰카’, ‘성추문’ 등) 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영상 보도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넣거나,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여 영상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무리 범행 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장면의 재연이나 영상 보도는 삼가야 한다.

10)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 구조적인 문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대책,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며, 성폭력·성희롱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시키는 조직 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정보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알리고,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도 적극 보도한다.
- ▶ 사건 초기 뿐 아니라 성폭력·성희롱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전문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예방과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특정인의 인격권, 무죄추정원칙,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며 다양한 인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 보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2011. 9. 23.)의 세부 기준으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인들이 준수해줄 것을 권고한다.

총강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와 함께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 구조,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은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 왔다. 언론은 이런 맥락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각과 태도로 성범죄 보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언론은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언론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 부각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3. 언론은 성범죄를 사회적 성역할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기초해 피해자의 도덕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언론은 사회적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반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천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언론은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10. 언론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 등의 제공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 보도한다.

2012년 12월 11일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